2013. 12. 05

제주 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차례

제주해군기지 예산 삭감 8대 이유

1.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 강행 3

2.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증 필요 4

3.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여전 6

4. 군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8

5. 천연기념물 훼손하는 진입도로 건설 10

6.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11

7.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목적 13

8.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 14

강정마을과 시민사회의 제안 15

1.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 강행

1) 국회는 2013년 예산 2,010억여 원을 심의, 의결하면서 70일 검증기간 동안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결정함.

2) 국회 부대조건은 '선 검증, 국회 보고 후 예산 집행'임. 즉 정부가 2013년도 제주 민군복합항 예산을 집행하려면 여야가 합의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예산 집행절차에 따라 70일 검증기간 동안에는 공사를 유예해야함.

- 실제 기획재정부도 1/4분기 예산을 국방부에 배정하면서 검증에 필요한 70일 기간 동안 사용될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0일간의 공사비(162억 원)만 책정함.

3) 국방부는 70일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그 근거로 국회 부대조건은 '예산 집행 정지'로 '공사 중지 결정'은 아니라고 주장함.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공업체와의 2013년도 공사계약 체결을 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국회 결정에 따라 애초 공사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도외시한 주장임.

- 계약 체결도 예산 집행에 포함됨. 국회 예산 정책처가 조사·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집행은 예산 배정 및 재배정, 지출원인행위 등 지출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곧 지출 원인행위도 역시 예산집행에 포함되므로 예산 집행을 정지시킨 국회 결정은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당연함.
- '외상공사는 관행'이라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불법 공사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음. 70일 검증기간 동안의 공사는 불법이라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건설업체가 자구책으로 외상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시공사를 앞세워 불법 공사 강행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속내에서 나온 얄팍한 주장에 불과함.
- 70일 검증기간 동안 진행된 공사는 2013년도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행한 불법공사임. 국가계약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제주 민군복합항과 같은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예산은 매년 배당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 또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공사의 외상공사(선 시공)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7조 1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나아가 기획재정부는 2007년 "연차별 계약 체결 전 외상공사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연차별 계약 체결 없이 공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힘.
- 이처럼 70일 검증기간 동안 강행된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명백히 불법공사이며 설령 시공사가 자구책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국방부는 시공업체의 불법공사를 방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2.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 재검증 필요

1) 규명되지 않은 선회장과 항로 설계 기준의 적법·적합성 문제

-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항 설계에서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의 선회장 설계 기준과 항로 법선 설계 기준을 위배하여 선회장을 1.5L(520m)로, 항로 교각을 77°로 설계함.
- 이 때문에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 검증 문제가 제기되자 2011. 11. 7. 국회 예결위는 "15만 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 검토는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협의하여 실시할 것,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함.
- 국회 권고에 따라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선회장과 항로로 인한 항만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 검증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검증회의 운영과 최종보고서 작성에 정부가 개입하여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고 최종 보고서 결론을 공사 중단과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총리실과 국방부의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

2) 세 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것임

-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의 경우 시설 설계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제주 민군복합항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시뮬레이션 검증은 모두 운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 즉 선회장과 항로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코끼리 집어넣기'와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실시된 것임.
- 1차 시뮬레이션의 경우 풍속값과 횡풍압면적 등 시뮬레이션 변수값이 왜곡·조작된 조건에서도 15만 톤 크루즈 선박 운항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남. 2차 시뮬레이션에서도 15만 톤 크루즈 선이 서측 돌제 부두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입출항시 크루즈 선이 남방파제에 부딪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부도 서측 돌제부두는 가변식으로, 77° 항로는 30°로 변경하는 등 설계 오류를 부분적으로 인정함.
- 서측 돌제부두를 아예 없앤 상황을 가정한 3차 시뮬레이션에서도 15만 톤 크루즈 운항 시 항 입구부에서 압류 현상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조건에서는 예인선 2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15만톤 크루즈 운항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보고서, 15~17쪽, 2013. 1. 31)
- 3차 시뮬레이션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국방부(해군)도 3차 시뮬레이션 시에서 실제보다 성능이 우수하게 모델링된 선수 스러스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또 항 입구부 충돌 여부 평가 대상에서 동방파제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음.

- 국방부는 3차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 크루즈선 운항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와 함께 출항 시뮬레이션과 비상시 시뮬레이션이 제외됐다는 점, 박명시(일출전, 혹은 일몰 후에 빛이 남아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야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크루즈선이 야간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면 15만톤 크루즈선 운항 안전성은 재검증되어야 마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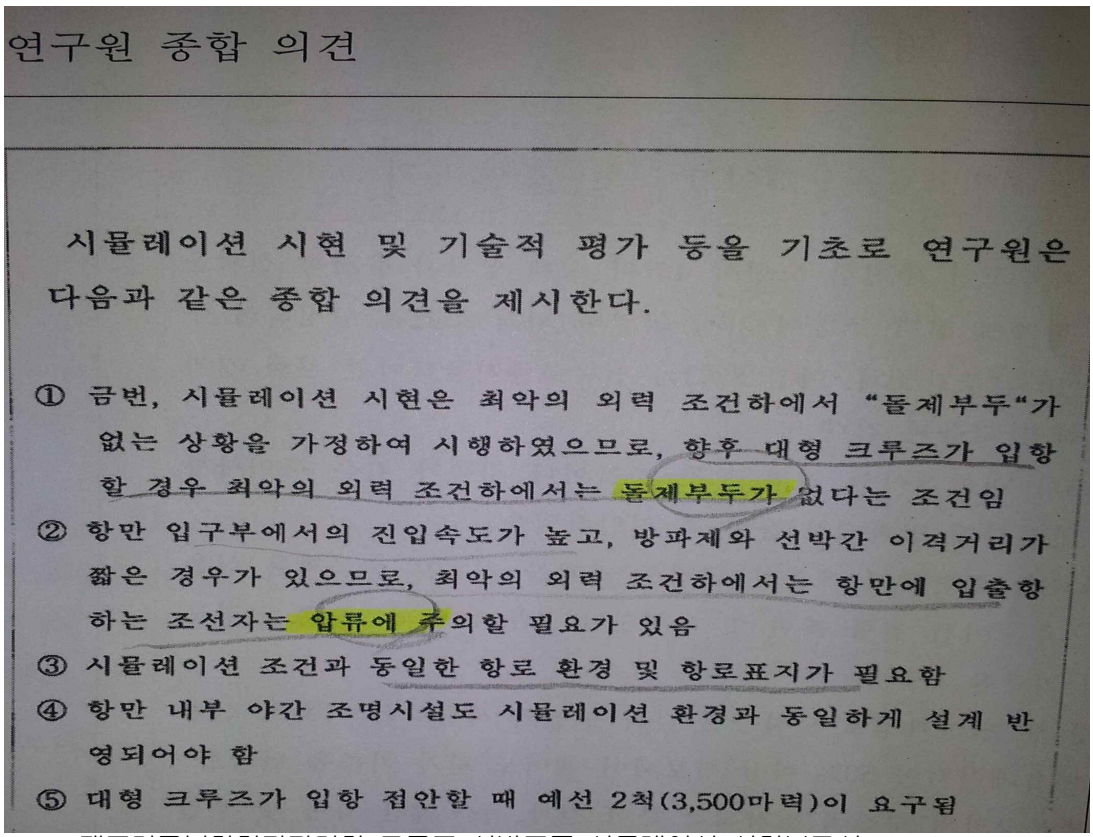

연구원 종합 의견

시뮬레이션 시현 및 기술적 평가 등을 기초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종합 의견을 제시한다.

① 금번, 시뮬레이션 시현은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 "돌제부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하였으므로, 향후 대형 크루즈가 입항할 경우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는 돌제부두가 없다는 조건임
② 항만 입구부에서의 진입속도가 높고, 방파제와 선박간 이격거리가 짧은 경우가 있으므로, 최악의 외력 조건하에서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조선자는 압류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③ 시뮬레이션 조건과 동일한 항로 환경 및 항로표지가 필요함
④ 항만 내부 야간 조명시설도 시뮬레이션 환경과 동일하게 설계 반영되어야 함
⑤ 대형 크루즈가 입항 접안할 때 예선 2척(3,500마력)이 요구됨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보고서, 2013. 1. 31

3) 30° 변경항로, 각종 환경보호구역 침범

- 30° 변경항로는 저수심대와 각종 보호구역을 지나게 되는데 변경 항로가 제주 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변경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 해양 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함.
- 한편 15만 톤 크루즈 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변경항로(저수심대)의 준설 및 암굴착은 필수 요건이나 변경항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 항로가 변경된 후에 실시된 2차, 3차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환경적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것임.
- 만약 변경 항로가 환경상, 법적 절차상의 문제로 제주해군기지의 항로로 기능할 수 없게

되면 변경항로를 전제로 한 해군의 15만 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주장도 설자리를 잃게 됨.

- 따라서 국회는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관련 당국에 요구해야 마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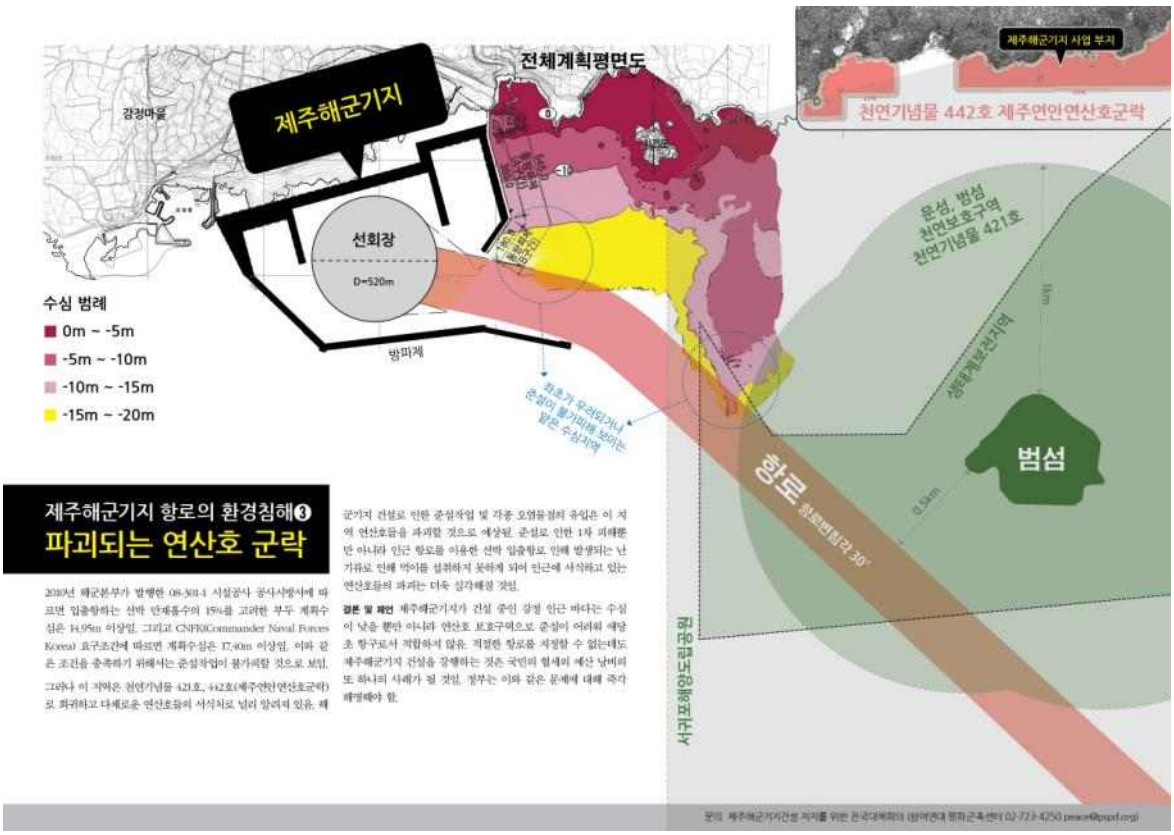

3. 2013 예산 부대조건 위배 : 군항위주의 운영에 대한 우려 여전

1) 민항은 껍데기, 군항위주의 설계와 운영

- 국방부는 제주 민군복합항을 설계할 때부터 민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항위주로 설계함. 이에 제주 해군기지 사업 청문관은 2012년 4월 18일 공사 중단 의견을 밝히면서 "설계 과정에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 국방부는 "민군복합항의 군항 중심 운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했다고 주장(장하나 의원실 2013. 7. 26.)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기만적 주장임.
- 우선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2012. 6.)하여 제주 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했으나 제주 민군복합항은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도 제주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루즈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시행령, 2012. 6.)함으로써 무역항으로 지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이에 군항 중심으로 운영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최소한 무역항으로 지정된 구역만이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해야 마땅함.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주의 소리, 2012. 4. 5

2) 군사작전을 이유로 한 크루즈선박 및 민간인 출입 통제

-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서'(이하 '협정서')체결은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2011. 11.)의 권고사항이자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집행의 부대조건임.
- 70일 간의 검증기간이 만료된 직후인 2013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국방부, 제주도 3자는 협정서 체결에 합의함. 협정서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함의 위치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공하기로 했음. 또한 크루즈 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음. 크루즈 접안 시설은 크루즈 선박이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사작전 등 군함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했음. 한편 국방부 장관은 서측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며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해 도지사의 요구가 있으면 서측 돌제부두를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음.
- 하지만 협정서는 "군사작전 등 특별한 사유"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제5조 시설 및 구역의 이용대상) 제주도 지사와의 협의만으로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이용(제5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군사작전상 필요시,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그 밖의 군사작전상 긴급히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국방부 장관이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17조 시설 및 구역의 출입통제)하고 있음.
- 이러한 조항에 비추어 한미 군사훈련 시 미 핵 항모나 이지스 구축함의 입출항을 제한하기 어렵게 되거나 군함이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에 우선할 것이 우려됨. 또한 서측 돌제부두 설계 변경에 따라 대형함 부두의 선석 확보가 힘든 조건에서 크루즈 부두를 군함의 접이안 및 계류용으로 이용할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에 애초 제주도의 요구대로 제주 민군복합항을 "크루즈 선박과 해군함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사용"(국토교통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 정부안 검토 의견, 2012. 6. 29.)하고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보장하려면 최소한 민간인과 민간선박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구체적 경우를 명시하고 제17조의 관련 조항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임. 또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사용하려 할 경우 제주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명시해야 할 것임.

4. 군 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1) 군 관사 규모 축소 고시는 편법

- 2013년 8월 해군은 강정동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함.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피해 군 관설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편법임.
- 즉 해군은 올해 6월까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었으나 3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무산되자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2012년 6월 27일자)'를 내고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했음.
- 해군은 8월 공고와 달리 10만여㎡ 부지에 616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을 고수하고 있음. 이와 관련 장하나 의원은 해군이 80세대 규모, 9400여㎡를 고시했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동일지역에 5만9500여㎡ 부지에 380여 세대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80세대 고시한 의도는 80세대 규모 9400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인 1만㎡ 미만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조항을 피해 군 관사 건설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꼼수라 할 것임.
- 만약 이러한 편법을 허용할 경우, 불법, 탈법 공사 논란을 키우고 이로 인한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음.

2) 군 관사 건립사업은 대표적인 주민 반대사업

- 군 관사 토지매입비는 대상 부지 토지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 거부 의견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한 바 있음. 또 해군이 새롭게 대상 부지로 대상으로 한 2013년 3월의 사업설명회도 주민반대로 무산된 상태로 예산 집행가능성이 저조하며 주민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할 경우 새로운 갈등만 생산하게 될 것임.
- 애초 해군이 군 관사 건설 부지로 선정한 E지구 토지주 24명 중 21명이 토지 소유권 이전(매매, 양도)을 거부하는 의견서를 관할청에 제출함. 군 관사 사업 설명회(1차 2012. 5. 29, 2차 2012. 6. 15) 역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됨.
- 이에 해군은 사업부지 대상을 애초 E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하여 3차 주민 설명회(2013. 3. 26)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됨.
- 2013. 4. 10 해군기지 찬반 주민 145명이 참석한 주민 총회에서 해군관사 유치 여부 및 설명회 개최 여부에 관한 비밀투표 결과 투표자 118명 중 반대의사를 밝힌 주민은 114명, 군 관사 유치를 찬성한다는 주민은 3명, 무효표는 1명에 불과해 총회에 참석한 96%이상의 주민들이 군 관사 건립에 강한 거부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해군이 2013년 8월 19일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군 관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공고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짓밟고 군 관사 건설을 강행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 것임. 실제 강정마을회는 공고 다음날인 8월 20일 성명을 통해 군 관사 건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함.

- 군 관사 토지 매입비 34.7억 원, 기본조사설계비 중 군 관사 실시설계VE비 77백만원, 실시설계비 중 군관사 실시설계비 16.4억 원, 시설비 가운데 군 관사 공사비 141억 원, 감리비 가운데 군 관사 공사 감리비 6.2억 원을 대폭 삭감해야 함

군관사 건설 예상지역 및 관련한 강정마을회 주민총회 공고

5. 천연기념물 훼손하는 진입도로 건설

- 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구간의 경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기념물 제162호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군락 분포지역이며 서귀포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곳임.
- 이와 관련, 해군이 교량 설치를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2차례 모두 불허함.
- 한편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안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544호인 담팔수가 자라고 있음. 이 나무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5647(냇길이소당)에 자라는 상록교목이자 신목(神木)으로 수령은 약 5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는 11.5m로 국내에 자생하는 담팔수 중 규모가 크고 수형도 매우 독특해 생물학적 가치가 클 뿐 아니라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는 민속 신앙물이라는 점에서 민속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문화재청은 평가하고 있음. 이에 만약 녹나무 자생지가 훼손될 경우 담팔수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녹나무 자생지 등 천연기념물 훼손우려가 큰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9.5억원, 시설비 가운데 진입도로 공사비 137억 원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감리비 가운데 진입도로 공사 감리비도 4.3억원도 조정이 필요함.

녹나무 자생지 군락

천연기념물 제544호 담팔수

6. 연산호 군락지 훼손 및 수로조사 누락

- 제주 민군복합항 주변 해역에 서식하던 멸종위기종 연산호가 최근 1년 여간 괴사하거나 생장을 멈춘 것으로 확인됨. 장하나 의원실, 강정마을회, 제주 범대위, 전국대책회의가 2012년 8월과 2013년 9월 수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해군기지 공사해역 500미터 안쪽 구간에서 연산호가 괴멸하거나 성장을 멈추고, 공사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는 현상을 확인했음.
- 지난 2013년 6월 해군이 발표한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서도 2012년 70종에 이르던 연산호 군락이 올해 1분기 47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연산호 군락지 훼손은 일차적으로 서방파제와 남방파제 공사로 인한 바닷물 흐름이 거의 차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서방파제와 1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강정등대 근처 연산호 군락의 조류는 거의 멈춰있는 것이 확인되며 부유사 침전도 상당히 넓은 부분에서 확인됨. 방파제 공사를 위한 대형 케이슨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에 집중 투하되었는데 이로 인한 조류 소통에 문제가 생겨 연산호 훼손이 된 것으로 보임. 또한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다량 유출되거나 사석 투하 시 부유사 최소화를 위한 폴 파이프(fall pipe)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연산호 군락지 괴사는 해군의 불법, 탈법 공사가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공사가 진행될수록 서건도 일대, 기차바위와 범섬 일대로 피해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큼.
- 2011년~2013년 9월까지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는 최소 11차례로 드러남. 이는 해군이 문화재청이 제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연산호 군락지 훼손 방지)조건이자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 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와 운영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 연산호 군락 보호 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 없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연산호 군락은 물론 제주연안의 희귀 동식물 등 생태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큼.
- 제주민군복합항의 공사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수로 조사가 누락됨. 2013년 11월 제주민군복합항 좌우, 즉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인근의 조류 흐름이 매우 빨리진 현상이 관찰됨. 서방파제 부근 등대, 서건도 인근, 기차바위 연산호 군락이 훼손, 괴사 된 것도 조류속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해군은 2011년에 연산호 보호를 10개의 연산호 유생착생시설을 투하했으나 2013년 6월 현재 단 1개도 착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강정포구 항로의 조류 흐름이 빨라져 소형어선이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또 조류 변화로 절대보전지역인 강정천, 악근천 하구에 빠른 속도로 모래가 퇴적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서건도, 범섬 인근 해양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큼.
- 2013년 8월말 현재 제주민·군복합항 예산 집행률은 51.5%, 990억원에 달함. 이는 2013년 예산 2010억원의 91%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비(1,843억원), 특히 항만공사비(1568억 원으로 전

체 예산의 78%)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말해 줌. 실제 서남방파제 케이슨 정거치 공사가 늦어지고 정거치 된 케이슨도 높이가 고르지 못하며 2012년 볼라벤 태풍으로 파손된 7함의 케이슨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임.

- 2014년 예산도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4년 항만공사비 1,508억원을 대폭 삭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항만공사 집행률 저조 원인 파악 및 수로조사를 통한 생태계 보전과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을 마련 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감리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32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7.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 목적

- 국방부는 ① 북한 도발 억제, ② 이어도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에 대한 감시 및 보호를 제주 민군복합항 사업목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제주 민군복합항 사업목적은 허구임.

1) 북한 도발 억제 주장의 허구성

- 제주해군기지는 휴전선과 NLL로부터 최대 780km 떨어져 있어 해상, 수중, 상륙, 종심 공격 등 해군의 어떤 성분작전에 대해서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음. 제주해군기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지라는 주장은 남방 해역과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기지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가 한층 유리하다는 국방부 자신의 주장에도 모순됨.

2) 이어도 해양 주권 보호 주장의 허구성

- 이어도는 수중 암초여서 영토, 영해 분쟁 대상이 될 수 없음. EEZ 문제는 유엔 해양법에 의거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미 한중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협상 중에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최근 이어도가 암초이며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
- 최근 중국이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것에 정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어도 상공을 40년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해온 것 확인.
- 결국 이어도 수호를 위한 해군기지 건설론은 허구였고 도리어 이어도 문제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것 확인됨.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결국 한미일 해군공군협력을 강화하여 중국과 대치하는 현상이 강화될 것이 우려됨

3) 남방해역 보호의 허구성

- 남방해역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지 않아도, 즉 육지기지에서 발진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 해·공군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유리한 작전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음.
- 목포→이어도 340Km, 15.5시간 : 중국 영파→이어도 398Km 18시간 : 일본 사세보항→이어도 450km, 21시간 : 진해→이어도, 중국 영파와 비슷.

4) 해양수송로 보호의 허구성

- 국가에 의한 해양교통로 위협을 상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한·중간 교역량이 미·일간 교역량 합산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양자가 해상로 봉쇄 등을 강행할 수 없음. 중국, 일본 등이 해양교통로를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전제임. 설령 중국 등이 해양교통로를 봉쇄한다고 해도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음.
- 중국은 해군력에서 우리에게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나 남중국해가 근해여서 해상

작전에 대한 공군 등의 지원과 군수지원이 용이한 반면 우리는 결정적으로 불리함. 이들 해역에 대한 중국의 전력 및 작전 환경의 우위는 앞으로도 바뀌기 어려울 것임.

- 해적 대응을 위해서는 굳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지 않음. 이 경우 해경의 임무로 되며,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적에 대한 대응은 제주에서 출동하든 부산에서 출동하든 그 차이는 무의미함.

5)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

- 한미일 해군협력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어 동북아 패권경쟁에 휘말릴 가능성 높음.

8. 계속되는 인권침해와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해소 선언

-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의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공권력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 지역으로 강정마을을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2013년 11월 현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벌이다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여명의 주민이 연행되어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활동에 부과된 형사재판 벌금액도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도 2억~3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고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형사처벌과 과도한 벌금 부과는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옥죄고 있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강정주민 1,900명 중 단 87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결정되는 등 그 시작부터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임. 또한 최근 체결한 "국방부-국토교통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시에도 주민은 배제한 채 정부 부처와 제주도정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당 협정서 체결이 갈등해소 분류의 근거라 볼 수 없음.
- 정부는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 방침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함. 또한 강정 마을에 투입된 과도한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정당한 평화 활동 중에 구속된 활동가와 주민들을 즉각 석방 및 기소를 취하해야 함.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의 제안

- 2013년 국회 예결위 합의 사항인 70일 검증기간 동안 불법공사를 강행한 국방부의 책임을 물어야 함
-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중 하나였던 15만 톤 크루즈 운항 안정성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함
-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당국에 요구해야 함
- 해군이 군 관사 규모를 축소해 고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청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함
- 군 관사 토지 매입비 34.7억 원, 기본조사설계비 중 군 관사 실시설계VE비 77백만원, 실시설계비 중 군관사 실시설계비 16.4억 원, 시설비 가운데 군 관사 공사비 141억 원, 감리비 가운데 군 관사 공사 감리비 6.2억 원을 대폭 삭감해야 함
- 천연기념물 훼손우려가 큰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9.5억 원, 시설비 가운데 진입도로 공사비 137억 원을 삭감하고 감리비 가운데 진입도로 공사 감리비도 4.3억 원도 조정해야 함
- 항만공사비 1,508억 원을 삭감하고 동시에 선 수로조사를 통한 생태계 보전대책 및 연산호 군락지 보호 대책을 마련 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것. 또한 감리단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물어 항만공사 감리비 32억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 총리실이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 방침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도록 해야 함
- 제주해군기지가 한미일 대중 해군협력에 활용되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유발하고 동북아 해양의 군사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이 기지의 입지적 군사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31개 단체)

4.3도민연대,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기독교장로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 청춘,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공무원노조제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준),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DPI,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탐라자치연대, 통합진보당제주도당,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모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08개 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AWC한국위원회,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을 따르는 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

제주 민군복합항 2014년 예산 삭감 의견서

발 행 일 2013. 12. 05

발 행 처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책임집필 오혜란 공동집행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담 당 백가윤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